



“취업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”



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안내

(참여기업용)



국민취업지원제도란? ▶

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
‘한국형 실업부조’ 제도

일경험프로그램이란? ▶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
‘다양한 직무에서의 일경험 기회’를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



고용노동부



‘왜’ 일경험프로그램인가요?

01

- 우수 인재를 조기 확보하면서 조직 적응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
-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한 이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여,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('22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)
-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들이 1:1로 참여자들을 관리하면서 성실한 참여 유도



‘누가’, ‘언제’ 참여할 수 있나요?

02

- 내실있는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NGO,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
- 참고 10인 이상 기업이라도 소비·향락업, 인력공급업·파견업, 임금채불·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내실있는 일경험이 불가하다고 판단 시 참여 불가
-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상시 신청 가능



기업은 ‘무엇’을 해야 하나요?

03

- 참여자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고, 일경험 운영시간 중 일정 비율을 취업과 관련있는 별도 교육시간으로 운영
- 멘토-멘티를 기반으로 참여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업무능력에 대한 피드백 제공
- 참고 피드백 등을 통해 회사에 적합한 인재 육성, 정식 직원으로 채용·연계 가능



기업은 ‘어떤’ 지원을 받나요?

04

- 참여기업에는 프로그램운영수당 (참여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) 지원
- 표준커리큘럼 및 직종별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



일경험프로그램은 ‘어떻게’ 진행되나요?

05

- ① (신청·심사) 신청서 / 운영계획서 작성·신청 → 관할 고용센터 승인여부 심사 → 위탁기관과 지원약정체결
- ② (모집·선발) 직무별 지원자격 설정 및 모집 공고·선발
- ③ (운영·수료) 일경험 진행(참여자 관리), 종료 후 참여자 평가 및 지원금 신청



‘어디서’ 신청할 수 있나요?

06

- 충주고용지원센터 043)850-4018 또는 일경험위탁기관 행복잡고 043) 854-6672로 문의
- www.kua.go.kr에서 직접 신청 가능 (워크넷 기업회원 로그인 → 신청서 작성 → 첨부파일 등록 → 추천기관 : 위탁기관)



참고 「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」 운영 후 해당 참여자를 정식 직원(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)으로 채용하면, 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」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
*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 등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으로 문의, 자세한 사항은 www.work.go.kr/youthjob 참조

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세부 내용



구분	훈련연계형	체험형
참여자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진단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 자	
참여자 지위	일경험 수련생* * 다만,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여	
일경험 기간	1~3개월	20~30일
일경험 시간	1일 4~8시간	1일 4시간 원칙
지원금액	프로그램운영수당 참여자 1인당 1개월 최대 50만원 (* 참여자 1개월 최대 140만원 별도 지급)	멘토링수당 1인당 10만원 (* 참여자 1일 최대 22,000원 별도 지급)
일경험 규모	고용보험 피보험자(접수일 직전 월말기준) 수 기준 40% 이내	
준수 사항	▪ 취업과 관련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▪ 참여자가 직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(업무능력평가서 작성) ▪ 위험 유해한 업무 불가,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조치 필수	

* (유의) '23년 일경험프로그램은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하되 예외적으로 전체 지원규모의 10%는 체험형으로 운영됩니다.